

第2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12.11. ~ 12.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45
II.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7
III.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259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1
3. 조례심사보고서	27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의가 있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제211회-제1차 본회의]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신설학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12월 12일과 12월 13일 2일간은 신설학교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 권한이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고,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08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11시 09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개교 예정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수용 계획과 시설공사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교육위원이 12월 12일 1일간 청주 성화중학교와 충주 국원초등학교 2개교의 신축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정무 위원님과 광정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4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학생건강체력시범학교 발표회 참석차, 안세열 시설과장께서는 기술직 연수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곽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종전의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에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교육감 및 교육위원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 공개 대상자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심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낫표 표기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8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제24조부터 제29조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해봅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충북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한해 교육 여러 분야에서 거둔 값진 성과에 대하여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사회의 주역을 키워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일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래의 원대한 꿈과 이상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해 온 학생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올해의 마지막 회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만큼 우리는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계획과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현명한 교육감님이 선출되어 충북교육이

[제211회-제2차 본회의]

한층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
해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하여 희망찬 충
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가족 여

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1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12. .

의 장 성 영 용 成 永 龍

위 원 정 무 鄭 武

위 원 광 정 수 廣 正 守

의사국장 박 경 석 朴 景 石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12. 11. ~ 12. 14.(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월 11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12. 11. ~ 12. 14. (4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4. 신설학교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12월 12일(수)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현장방문 ○ 성화중 신축현장, 국원초 신축현장	본회의휴회
12월 13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휴회
12월 14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21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211 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1
----------	-------

제출연월일 : 2007. 12.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안 제3조제2항)
 -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라.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마.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9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u>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p> <p>2. (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u>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임한다.</u></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u></p> <p>1. <u>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제2조(구성) ①-----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u>----- -----.</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p> <p>1. <u>재산등록 대상 공직자</u>----- ----- -----</p>

2. ~ 4. (생략)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 (생략)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2. ~ 4. (현행과 같음)

②-----
-----.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 (현행과 같음)
- ②---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p><u>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u> <u>규정에 의한 승인</u></p> <p>2. <u>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u> <u>조치</u></p> <p>3. (생략)</p> <p>4. <u>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u> <u>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u></p> <p>③ ~ ④ (생략)</p> <p><신설></p> <p><신설></p> <p><u>제9조 (생략)</u></p>	<p><u>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u> <u>승인</u></p> <p>2. <u>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u> <u>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u> <u>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u> <u>통보</u></p> <p>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u> <u>의 규정-----</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u> <u>한다.</u></p> <p><u>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u> <u>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u> <u>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u> <u>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u> <u>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u> <u>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u> <u>하여야 한다.</u></p> <p><u>제10조 (현행과 같음)</u></p>
--	---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 (심사결과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 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별첨 3)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12. 14.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2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2월 1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2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공보감사담당관 음 영 호)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안 제3조제2항)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개정) 및 같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9호, 2006. 12. 21. 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낱표 표기와 일부 용어에 대하여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기준을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종전의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에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교육감, 교육위원)」 및 「3급이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을 종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위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8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제24조부터 제29조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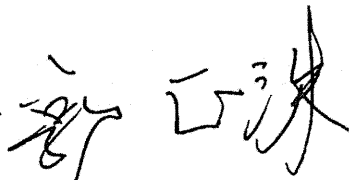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 12. 14.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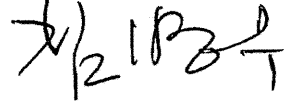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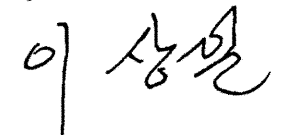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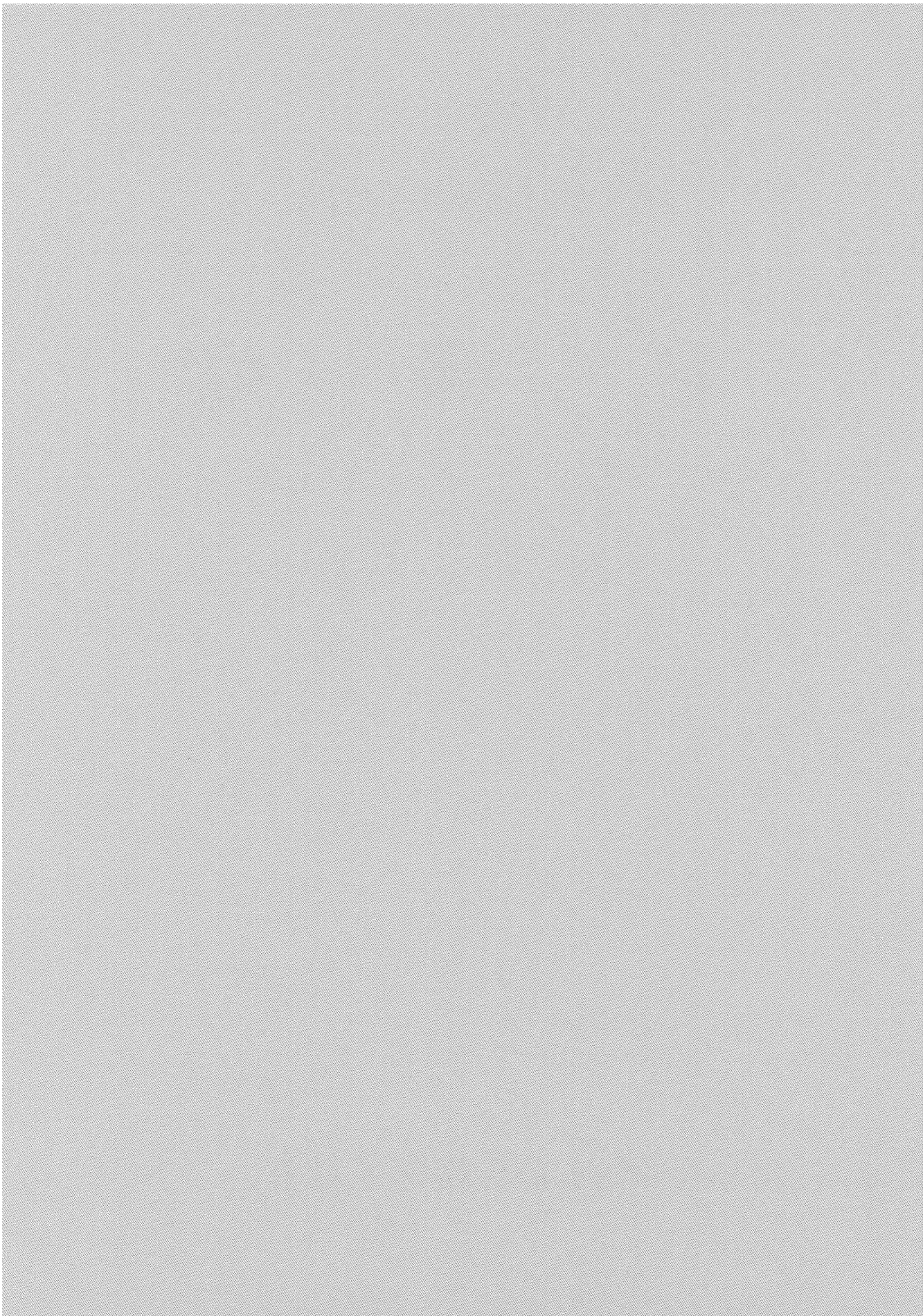


第2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12.11. ~ 12.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45
II.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7
III.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259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1
3. 조례심사보고서	27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1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의가 있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명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안전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에 관한

[제211회-제1차 본회의]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신설학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12월 12일과 12월 13일 2일간은 신설학교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 권한이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고,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08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11시 09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개교 예정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수용 계획과 시설공사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교육위원이 12월 12일 1일간 청주 성화중학교와 충주 국원초등학교 2개교의 신축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정무 위원님과 광정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4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학생건강체력시범학교 발표회 참석차, 안세열 시설과장께서는 기술직 연수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곽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제211회-제2차 본회의]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종전의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에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교육감 및 교육위원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제1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심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낫표 표기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8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제24조부터 제29조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회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해봅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충북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한해 교육 여러 분야에서 거둔 값진 성과에 대하여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사회의 주역을 키워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일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래의 원대한 꿈과 이상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해 온 학생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올해의 마지막 회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인만큼 우리는 충북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계획과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은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현명한 교육감님이 선출되어 충북교육이

[제211회-제2차 본회의]

한층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
해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해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하여 희망찬 충
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가족 여

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11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3)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12.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정 무 鄭 武

위 원 광 정 수 廣正守

의사국장 박 경 석 朴 敬 石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12. 11. ~ 12. 14.(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월 11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12. 11. ~ 12. 14. (4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4. 신설학교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12월 12일(수)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현장방문 ○ 성화중 신축현장, 국원초 신축현장	본회의휴회
12월 13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휴회
12월 14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21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211 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1
----------	-------

제출연월일 : 2007. 12.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안 제3조제2항)
 -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라.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마. 전년도외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9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

제5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u>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u></p> <p>2. (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u>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선임한다.</u></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u>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u></p> <p>1. <u>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제2조(구성)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u>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u></p> <p>2.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p> <p>1. <u>재산등록 대상 공직자</u> ----- ----- -----</p>

<p>2. ~ 4. (생략)</p> <p>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p> <p><신설></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생략)</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법 제8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p> <p>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p> <p>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p> <p>-----.</p> <p>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p>
---	---

<p><u>조사의뢰 및 동조 제12항의</u> <u>규정에 의한 승인</u></p> <p>2. <u>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u> <u>조치</u></p> <p>3. (생략)</p> <p>4. <u>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u> <u>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u></p> <p>③ ~ ④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제9조 (생략)</u></p>	<p><u>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u> <u>승인</u></p> <p>2. <u>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u> <u>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u> <u>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u> <u>통보</u></p> <p>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u> <u>의 규정-----</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u> <u>한다.</u></p> <p><u>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u> <u>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u> <u>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u> <u>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u> <u>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u> <u>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u> <u>하여야 한다.</u></p> <p><u>제10조 (현행과 같음)</u></p>
--	---

관계법령발취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⑫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 (심사결과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 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별첨 3)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12. 14.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2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2월 1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2월 1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공보감사담당관 음 영 호)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 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조정(안 제3조제2항)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

-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6조제2항)

-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개정) 및 같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9호, 2006. 12. 21. 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낱표 표기와 일부 용어에 대하여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기준을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종전의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에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교육감, 교육위원)」 및 「3급이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을 종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위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8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제24조부터 제29조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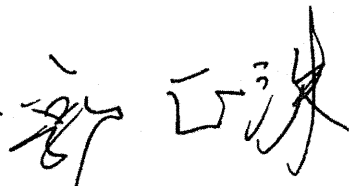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 12. 14.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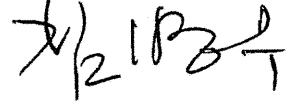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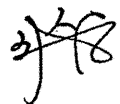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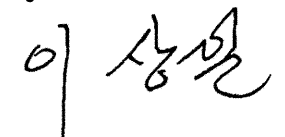
김부응



서수응



이상일



정무



第2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85
II .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89
III .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29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11시 14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4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위원장에곽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뒤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곽정수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윤리위원회 조례심사 위원장으로 선출된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원만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좋은 조례가 개정되고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로 대신하고,

2. 간사선출의견

(11시 17분)

● 위원장 곽정수

이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김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곽정수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8분)

● 위원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12월 13일 목요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제211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박정수,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1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관과 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걱정수

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관할권이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왜 바꾸게 된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 간사 김병우

그렇죠.

그 공직자윤리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금년도 6월 22일날 됐습니다.

● 간사 김병우

개정이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러니까 법은 작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까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6월 22일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된 것은 법이 개정된 것은 1년이 됐고 지금 시행된 것은 6개월이 이렇게 됐는데 조례가 이렇게 정비가 늦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부터 법이 개정되고 바로 공포되면 시행되기 전에 그런 거를 정비하라고 텀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

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들 정비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충실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 간사 김병우

이후에 매번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이런 소리 안나오게 지금 이런 법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기획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 담당하시는 실무팀들이 입법예고 되거나 이렇게 법률 개정이 되는 그 방향이나 또 추세나 이런 것을 제때제때 잘 살펴서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물론 총괄관리는 기획관리과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인 각 과에서 해야됩니다.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획관리과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 간사 김병우

하여튼 각 실무단위에서 해당되는 그런 법률 재 개정 같은 것을 면밀히 살펴야 되겠지만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팀도 있어야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세심

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구조문대비표를 5쪽에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기능에 방금 설명하실 때도 개정요지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 언급이 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요 부분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행 조문에는 그 앞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이렇게 표를 했는데 뒤에는 왜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을 빼는 건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 음영호입니다.

당초에는 공개대상자와 등록대상자 구분을 해서 상위법에 인용조항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등록대상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규정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인용규정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물론 그거는 상관없겠죠, 그거는. 다른 조항들에는 그 인용조항을 넣은 것들도 있고 그렇다면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전에도 그게 들어 있었는데 굳이 빼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 설치근거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재산등록 공직자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용규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죠.

근데 조례 제정의 상위 법적 근거는 물론 제1조에 나와 있는데, 다른 조항들에도 인용근거들을 넣은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넣든지 아니면 빼려면 다 빼든지 제1조의 목적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다 빼도 되면 빼든지 해야지 일관성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알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넣든지 다 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인용규정을 삽입을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

들이 삽입을 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삽입을.....

물론 달라집니다. 지금 조문도 제10조 제1항 그게 달라져요, 분명히.

실무단위에서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법 제10조 제1항을 넣다 보면 지금 중앙에 공직자위원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제10조 1항은 포괄되어 있고, 이쪽에 개정되는 안은 저희들 소관사항만 압축하다 보니까 법 조항을 그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심의 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10조의 규정은 등록재산의 공개의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정 부분 등록대상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조례로 만들기 전에 법제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용규정을 삽입을 하면 지방단위에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서 저희들이 삭제한 내용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 부분은 인용규정을 안넣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권고가 있었다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리고 개정안 9조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요, 거기에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라고 이렇게 뜻을 박으셨는데 이것도 공직자윤리법 20조 2항인가 보니까 나오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는 국회에 내는 걸테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초단체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에 내는 것일테고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도 윤리위원회보고서는 도의회에 내는 것일테죠.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네,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면 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는 연차보고서는 교육위원회로 내야되는 것 아닌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직자윤리법에서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의 관할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의회 꼭 2차 정례회에만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법취지 자체는 지방의회에만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고 그리고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제출이 된다면 도의회에 제출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교육위원회에도 제출을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11개항의 교육위원회 권한사항 중에서도 도의회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선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타 열 한 번째 보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정이 상위법에서 지방의회의 2차 정례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까지 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런 얘기입니다.

● 간사 김병우

이 공직자윤리법을 행자부에서.....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뭘 하겠다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아까 질타해 주신 대로 6월 22일 이후에 바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법제처하고 협의,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다

가 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그 이상의 걱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정수**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간사 김병우**

없습니다.

● **위원장 곽정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제211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위원 김부웅, 서수웅, 정무.

0 출석공무원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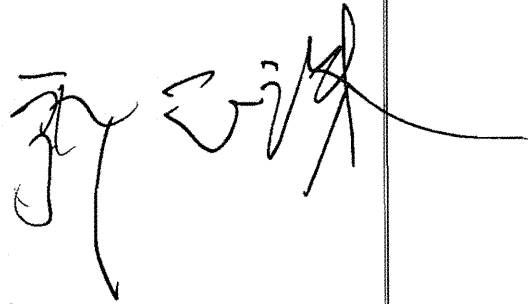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7. 12. .

위원장

곽정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곽정수' (Gwak Jeong-su), written in a cursive style. The signature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printed name '곽정수' and extends slightly beyond the right edge of the page.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7. 12. 11.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7. 12. 13. (목)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